

# 계절학기 운영규정

제정 1989.06.01.  
개정 1996.08.14.  
개정 2004.11.01.  
개정 2012.02.01.  
개정 2012.07.01.  
개정 2013.08.12.  
개정 2017.04.0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24조에 규정된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개설교과목)** ①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과 교과과정표 상의 당해 학기에 명기된(1학기(여름학기), 2학기(겨울학기)) 신규교과목, 재수강 교과목으로 한다.  
② 계절학기 강의교과목은 개강 전에 강의 수업 시간표와 함께 공개 고시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교과목의 선정)** 계절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장이 학사운영처장에게 제출하고, 학사운영처장은 이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 시간표와 함께 고시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수강신청)** ① 계절학기에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학과에 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 
② 강의 수강신청은 당해 학기 학과 교과과정표 상의 개설된 신규 교과목, 재수강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 
③ 학과 담당 지도교수는 학생 수강신청 지도 및 학점 이수를 지도 한다.

**제5조(납부금)** ① 계절 학기를 통해 학기 중의 동일 교과목 재수강 수강생은 강의 교과목 학점 당 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 
② 계절학기 납부금은 학점 단위로 부과되, 그 금액은 계절학기 개강 전 학과 의견을 개진하여 총장이 정한다.  
③ 신규 개설 교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은 승인에 의해 강의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**제6조(취득학점)** ① 계절학기의 강의수강 신청 학점은 총 9학점 이내로 한다.  
② 계절 학기의 강의교과목 학점 평가는 A+(100점)까지 부여할 수 있다.

**제7조(폐강기준)** 강의교과목 수강 학생수가 5명 이하의 교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하되, 강의교과목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총장 승인을 통해 개설 할 수 있다.

**제8조(기간 및 시수)** 계절학기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고, 1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